
당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당하동 주민자치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5. 2. 20.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따라 당하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에 따라 본 회는 “당하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인천광역시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당하동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더불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 후 스스로 결정하고 개선하며 책임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운영원칙) 운영세칙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의 화합 및 지역 간 협력도모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제6조(기능 및 권한) ①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4.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5.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운영 자치계획의 실행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7. 그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수탁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의 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 제20조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모집) ① 위원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결원시 수시로 모집하여 충원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위원 선정시 조례 제8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해촉된다.

② 다음 각호의 위원은 재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촉되며,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요구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자치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정기회의 또는 분과회의를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연간 5회 이상 불참자 (본인의 병환이나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체회비를 5회이상 미납한자
5.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당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지키지 아니한 위원
7. 정기회의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폭언 또는 고의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위원은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④ 해촉된 위원은 3년 내에 위원장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신설 2024.01.25.)

제12조(임원 및 임기) ①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주민자치 회장이 지명한다)
5. 재무 1명(주민자치 회장이 지명한다)
6. 분과위원장 각 1명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일반 민주주의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투표하여 진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가 계획·실행한 사업 등에 대해 정기 회의 및 임시회의 안건으로 보고한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임명 및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 보고 및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2. 주민자치회는 센터 기금 내에서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총회 및 주민자치회의와 각종행사를 진행(사회자)하며 분과회의 등에 참석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무는 자체회비에 대하여 예산회계 및 출납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상·하반기 연2회 정기감사를 받는다.

제14조(고문) ① 조례 제7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② 전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인 자치위원을 고문으로 둔다. (신설 2024.01.25.)

제15조(자문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을 5명 이내로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전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인 자치위원

2. 당하동 자생단체장인 자치위원

3.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치위원

4.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존경받는 자치위원

제15-1조(상근간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회 사무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는 상근직 간사를 둔다. 활동수당은 서구 예산으로 지급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당하동 센터기금에서 연단위로 지급한다. (신설 2022.01.20.)

제16조(분과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 참여하여야한다.

② 각 분과의 명칭과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기획분과 : 주민화합 축제 및 체육대회, 마을신문,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
2. 주민교육분과 : 문화프로그램운영, 꿈도서관(북카페)운영 등
3. 실버청소년분과 : 책이랑친구하자, 청학동전통예절교실,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
4. 도시환경분과 : 민원협력, 서구주민참여예산, 나진포천, 도시환경개선 등

③ 각 분과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및 분과원을 둘 수 있다.

④ 분과회의시 월1회 1식에 한하며 참석자에게 10,000원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0.)

제17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마을의제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 요구사항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 해결방안 모색
2.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마을공론장 운영, 주민 요구사항 수렴
3. 자치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에 상정 등

③ 분과회의 장소가 주민자치사무실일 경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만료시 분과위원회는 전체를 새로이 재구성한다. (신설 2024.01.25.)

제18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보존한다.

제19조(직인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하고 대내외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이 직인을 관리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회장에게 보고하고 날인하도록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② 주민총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투표방식은 본투표, 사전투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정기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5.02.20.)

구 분	일 정	운영내용 및 결정기준
정기회의	매월 세 번째 목요일	- 조례 제1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임원회의	매월 두 번째 월요일	- 운영세칙 제19조 (단, 감사는 참석아니할수 있다)
분과회의	각 분과별로 정함	- 조례 제12조에 의거 마을의제 발굴
임시회의	필요시	- 자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② 정기회의는 제17조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다음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의결사항

1. 운영세칙 제·개정(안)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안)
6.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7.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8. 분과의 증설 및 폐지에 관한 업무와 운영업무 등
9. 위원의 해촉 사유발생 및 자진사퇴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추가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등
10. 주민자치회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보고사항

1.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2. 기타사항으로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공무원 출석과 주요현안 및 자치해당업무에 대하여 지원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상벌)

①포상 : 주민자치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에게는 상부행정기관에 표창을 추천하거나 자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벌금 :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석을 요구하는 행사 및 주민자치사업에 연간 1/2 이상 불참한 경우는 벌금 100,000원을 연말에 부과한다.

③감사패 및 기념품 : 위원의 공로 및 포상시 감사패(10만원이하)와 꽃다발(3만원이하)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자체회비와 당하동 주민자치센터수익금(이하 센터기금), 교부금으로 총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체회비

② 센터기금 : 본회의의 사업에 따른 발생 수익금

③ 교부금

1. 사업비 : 주민자치회 사업에 지원되는 중앙 및 서구청 보조금

2. 운영비 : 본회의 운영을 위한 서구청 보조금

제24조(회비)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원활한 주민자치사업 진행 및 본동의 행사(체육대회 등)를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①일반회비 : 매월 5만원으로 한다. (단, 연납시에는 50만원으로 하며 정기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개정 2024.02.22.)

②특별회비 : 긴급 및 필요가 요구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6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재무(자체회비) 또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회장의 결정으로 월 30만원 이하의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정기회의(임원회의), 분과회의 식대 및 기타 필요 비용을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27조(위원의 애경사) ① 애경사시 『당하동 주민자치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하며, 개업시에는 5만원을 지원한다.(단, 1회에 한한다)
② 대상자는 위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한한다.

제28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운영세칙 제1호, 2021. 6. 10.〉

제1조(시행일) ① 본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세칙 시행 이전에 행한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